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자료집

연 세
성/폭/력
부리뽑기
연대회의

제12대 총학생회, 제30대 법대 학생회, 문대
여성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법대 성연구 모임 '동그라지는 온쪽이',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옴',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글 심 리 순 서

나는 모든
성폭력
반대한다

성폭력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학칙제정을 주장하는가!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안전지대?

타 학교의 성폭력 사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反성폭력 학칙

설문조사분석

왜 우리는 학칙제정을 주장하는가

1. 학칙제정을 주장하기까지 - 그 기나긴 과정들

11. 학칙제정운동의 줄기

대학 사회 내의 성폭력의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작 학칙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93년 서울대학교에서 신정후 교수 성희롱 사건이 우조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공론화된 이후의 일이었다. 그 이후 서울대 내에서 그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학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94년의 일이다. 신교수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별다른 논의의 진전은 없었으나 각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에서는 약대 구양모 교수의 사건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96년은 부산 교대 성폭력 교수가 학생들의 주장으로 휴직이라는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전후로 해서 부산 동아대에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97년 학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아주대에서도 지난 99년 반성폭력 학칙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바 있다(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아대와 아주대의 경우 많은 부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96년 여름, 연세대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9개 학교의 여성운동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가 꾸려졌고 이 모임에서 각 학교 여성운동 단위들이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활동들의 어려움과 한계를 풀고자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폭력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97년 4월, 다른 학교들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여 약 18개 학교들이 참여하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가 탄생하였다. 여성연대회의에서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건 중심적인 활동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성인식과 성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성폭력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거나 비도덕적인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여성연대회의를 통해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의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난 것은 97년 말, 98년 초라고 할 수 있다. 학칙에 대한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치면서 98년 5월에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몇몇 학교에서는 단과대 학생회 내의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자치적으로 제정하기도 했고, 강제력이 없는 자치규약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해 여론화 작업과 함께 학교측에 요구하는 일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편,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함께 교육부 지침이 각 학교로 내려오면서 여러 학교당국에서 학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당국들은 단지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학칙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만 있을 뿐이지 정작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이나 잘못된 성문화 자체의 변화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을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

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서 학칙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학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부 지침에도 상관없이 학생들의 반성폭력학칙제정 요구를 무시하거나 학칙제정에 별 의지가 없는 학교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학교들에는 교육부 지침을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도 같다.

12. 연세대 내의 상황

연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도 성폭력 사건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드러내고 있으며, 학내 학생상담소에 성폭력에 대해 문의했을 때는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공개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있었다. 한편 많은 경우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가 되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만 계속 힘들게 학교를 겨우겨우 다니거나 결국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를 떠나는 식의 사건 종결은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학내의 반(反)성폭력 운동은 주로 학내여성자치모임들과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의 활동을 자치규약 제정운동 중심으로 보자면, 98년 사회대 beyond와 99년 문과대 모반의 자치규약 제정운동, 99년 법대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낸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 올해 2000년 새터반성폭력내규 제정과 같은 것들이 있겠다. 이것들은 모두 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공동체 자체의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그 구성원들 스스로 그 문화들을 바꾸어나가는 한 방법으로 규약을 제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여성연대회의에 함께하며 학칙제정운동을 고민해오긴 하였으나 직접 학칙제정을 요구한 것은 작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반성폭력학칙을 만들기 위해 학교측과 논의를 하는 것은 올해가 그 시작이 된다. 그러나 작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 학칙제정을 준비한 학교측에서는 2000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이것은 현 총장과 학생처/여학생처 선생님 등의 임기를 말하는 것이다) 학칙제정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고 있으며 이미 가만까지 나온 상태이다. 학교측의 학칙제정과정에는 전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실제로 반성폭력 학칙과 관련하여 아무런 홍보도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특히 학생 참여는 거의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당국의 태도를 살펴볼 때 학교당국이 주로 삼고 있는 것은 단지 학칙의 '제정'일 뿐이고 적극적인 성폭력의 예방과 학내 성문화의 변화를 학교의 주체들과 함께 풀어내려는 생각은 없는 듯 하다.

얼마 전 교육부령 과정에서 학교측과 협상한 결과 교수와 학생이 동수로 참여하는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구에서 성폭력 학칙을 만들도록 합의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학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측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등록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테이블이었고, 사실 이 협상에 참여한 교수들도 성폭력 학칙 제정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상황의 급박함이나 복잡함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2. 왜 학칙인가?

3) 여학생처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 하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아무런 실질적인 결정권도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점에서 사실상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서울대의 인문대와 자연대, 고려대의 법대 등이 있다.

2) 교육부 지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6.다. 대학 등 각급학교(기관)의 역할

○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통보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하여 학교(기관) 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권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많은 학내 성폭력들이 단지 피해자를 성적으로만 괴롭힐 뿐 아니라 이후의 학습권까지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과 피해자가 속해있는 공동체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으로 성폭력의 고통을 더하는 일인 동시에, 피해자가 더 이상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로, 이런 상황은 결국 성폭력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회는 성폭력의 재발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토양이 될 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성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 당국은 도덕적 의무 외에는 성폭력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없었으며, 학생들의 대응은 사건별로 일회적·단기적 대응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학사회 내에서조차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비난받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성폭력을 이상하거나 특별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도 거부한다. 성폭력은 분명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것은 대학 사회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직원·교수·학교당국이 모두 함께 직접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대학 내 구성원들의 합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민주적인 성폭력 학칙제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21. 학칙은 대학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이다.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은 많은 부분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었지만 교직원이나 교수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역시 빈번하다. 우리 학교에서도 99년 8월 이후 학내의 성폭력 상담소로 신고가 들어온 7건의 성폭력 중 2건이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성폭력이 학생과 학생간의 문제만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교수나 교직원에게 의해 벌어진 성폭력은 또 다른 권력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권력의 하위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고가 거의 불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에서 발생한 신고수 사건만 보아도 학내에서는 공론화 이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지리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에 치명적인 침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이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다. 바

4)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교수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97년 4월 서울대 약대 구교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성폭력 박물관』에서 발췌)

▶ 사건의 개요 -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94년 4월 28일 실험을 위한 채집을 하기 위하여 교수님과 마산 근교의 시골로 가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였으며 머리를 쥐어박고 허벅지, 옆구리 등을 꼬집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마산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구교수는 동생 댁에서 자게 될 거라는 출발할 때의 이야기와는 달리 호텔에서 묵자고 하였다. 그리고 교수님은 방을 한 개만 얻었고, 정선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으로 끌고 가서는 성추행을 시도하여 정선배는 결사적으로 항의하였다. 그리고 구교수는 정선배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가버렸다.

정선배는 이런 사건을 겪고는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왔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실험실에는 여학생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이후에 어색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95년 10월 박사학위 논문 심사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교수가 내라고 할 때까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96년 4월 다시 말하였다가 몹시 혼이 났다.

96년 2학기가 되면서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정00씨 졸업해"라고 이야기하고 정선배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너는 더 비참해져야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절망해야 하고 3년 전에 학위를 줄 수 있었는데 미워서 안줬다. 미워서 조교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줬고 장학금도 안 줬다. 직장도 생겨도 다 퇴장 놓을 거다. 너는 내게 정이 있느냐? 너가 내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학위는 안 준다. 내가 너를 이번 학기에 졸업시키겠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 라고 하며 논문을 심사할 거부하자, 정선배는 참담함 속에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대구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정선배가 실험노트를 가져간 것을 이유로 집에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일단 사제간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 정선배는 97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교수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로 이러한 점에서 학내의 모든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학칙의 필요성이 절박해지는 것이다.

22. 학칙은 대학 사회 내의 남성 중심적 성폭력 담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목적은 '처벌' 뿐 아니라 대학 사회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 학칙 속에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의 해석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폭력이 제대로 녹아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순간순간의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가 분명 범죄가 됨을 알리는 것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적절한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들과 그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들이 학칙이라는 '악속'을 근거로 제시되고 생성되어 실제적인 권위를 지니고 활동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대학 사회는 구성원이 끊임없이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바탕으로 우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학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며 또한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학칙을 이야기한다.

3. 우리는 학칙제정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정선배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신과 피해를 받은 다른 지도학생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겪을 지도 모르는 후배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총장님에게 대학사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3/11일 제출하였다.

▶ 진정서 제출 이후의 경과

약대학부 비대위는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였고, 비상총회를 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입장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 구교수가 맡고있는 실험을 '구교수의 공개사과와 사퇴, 본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구교수를 퇴진시키고, 정선배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 기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약대 대학원에서는 각 실험실 대표자가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약대 교수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구교수 공개사과와 퇴진'을 내용으로 하는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했다.

약대 교수님들은 교수의 정계에 대한 권한은 본부에 있고, 약대에서는 학사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학사위원회에서 정선배와 다른 2인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였고, 행정적으로 논문제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위심사는 다른 대학원생들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약학과장과 제약과장 2인을 실무자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상 조사 작업을 하였다.

▶ 구교수의 고소결과

구교수는 정선배의 아버님과 정선배를 비롯하여 진정서에 언급되었던 다른 3인의 지도학생들(총 5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정선배의 경우는 여기에 공영서류무효죄의 혐의를 더해 형사 고소하였다. 현재 서울지검의 유재만 검사가가 사건을 맡아 조사하였으며 약대 교수님들의 진상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결과,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임이 판명되었고, 구교수는 무고죄로 구속되었다.

▶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4/15일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정선배, 약대학부비대위, 총학생회, 대학원자치회, 관악여성모임연대가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1. 학칙제정운동은 자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의 학칙은 더 이상 대학 주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구성원리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칙에 있는 한 글자도 본 적 없이 졸업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반(反)성폭력 학칙은 이제까지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로 작용했던 학칙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 역시 대학의 한 주체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직접 대학의 운영 원리를 구성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민주적인 학칙이다. 이것은 학교 당국에서 제시해주는 조그마한 이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직접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 담론을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사실상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학생의 권리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였다. 학생들을 무시한 행정중심적인 제도들,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학생들을 무시한 건물 혹은 시설들의 운영, 학생들을 무시한 교수님들의 강의 운영 등 이제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권리들 즉 자치권은 하나같이 그들의 편의라는 이름 하에 묵살되었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대학 당국은 결국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만을 보여줌으로서 학생들의 권리들은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사회에서 성폭력이 지니는 특수성, 즉 학습권의 측면 그리고 성폭력 학칙이 지니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의 스스로의 의지로 제정하고 지켜나가는 자치규약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단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운동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내 구성원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제정한 예로는 아주대가 있다. 지난 99년 성폭력 학칙을 제정한 이후 학생측에서는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측에서는 그 학칙에 의해서 단 한 건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이후 (지처서) 아무런 사건의 해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급하게 만들어 결국 제대로 된 학칙을 가지지도 못하고 성폭력을 해결할 의사도 없는 대학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도 못하고, 묻혀질 것인가.

32. 학칙제정운동은 대학 사회 내 성문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운동이다.

지난 5월 12일 학교측과의 협상을 통해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단은 기본적인 민주성이 보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그러한 권리들을 얻어낸 것은 학칙제정 운동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왜 우리가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 참여/대학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였는지, 우리가 원하는 학칙이 어떤 것이며 왜 그런 학칙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용·합의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단지 '학칙제정'만을 위한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학칙이라면 아무리 좋은 학칙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대학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 학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일반적인 학칙들과 다르지 않게 단지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학칙의 수준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유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여성주의적인 학칙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학칙제정운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대학 사회 내의 성폭력적인 담론과 구조들을 바뀌는 것으로서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양성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학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지 학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운동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학칙제정 운동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경우는 단지 학칙을 제정하는 데 매몰되어서 학교 당국과의 협상으로 모든 운동의 힘이 모아지고 마는 경우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반(反)성폭력 학칙제정이 우리의 지상목표가 될 수는 없다. 학칙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일상이 학칙이 제정되기 이전과 똑같이 성폭력의 위협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칙을 운영하는 사람들조차 성폭력에 대해 계속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렇게 만든 학칙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학칙제정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학칙제정을 요구했던 문제의식을 단지 학칙에 제한하지 않고 바로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칙제정운동과 함께 다른 방식의 반성폭력 운동들과 자신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직접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동시에 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5) 아주대의 학칙은 문제가 많은 학칙으로 유명하다. 성폭력을 성기중심적으로 심각하고 덜 심각한 것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강간이면 퇴학', '추행이면 XX', 'OO면 YY'와 같은 식으로 가해자 처벌을 구분해 놓았다.

성폭력과 관련해 연세대학교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연세대학교 L&B에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연세 L&B에도 학생 사이의 성폭력부터 교수,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까지 다양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세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중 공개 가능한 사건들만 공개합니다.

연세는 결코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내의 성폭력에 침묵한다면 끊임없이 연세에서 성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세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은 더 이상 연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反성폭력 학칙을 제정합시다.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안전지대
아닙니다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적 발언

1. 97년 신학과 모 교수의 수업기록 (교양필수 현대인과 기독교)

「하얀 기억 속의 너」라는 소설(무지무지 감명깊게 읽었다고 함..) 얘기하면서,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자기를 물심양면 도와준 한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날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는 껄껄대며, 그야말로 껄껄대며 '정말 그런 짝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상대 남학생들? (이 교수는 이상하게 상대 남학생들을 찾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군요) 그야말로 눈앞에 딱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게도 진정으로 우려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를 했답니다. 이에 대한 그 교수의 말, '예, 저는 이 남자를 보며 정말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느꼈습니다..'

10/28

여학생들 멋이나 내고 시집이나 잘 갈 궁리 하지 마세요.. 이대 학생들 보면 철학, 신학 박사가 다수인데 연대 여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뻔뻔질질하게 화장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나 꼬셔볼까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11/4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나이 들어서 기능은 있지만 힘이 없어지면, 집에 있는 여자를 만날 생각하는게 뭐겠어요? (도중에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한 여학생에게 - 시집갈 때도 그렇게 늦을래?) 바람필 궁리나 하고.. 여자 때리지 마세요, 어짜피 남편이 약값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참 여자한테 맞는 남자도 있지요, 얼마나 병신이면 맞고 살니까. 안 그래요, 상대남학생들?....

내가 요즘 '하얀'이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소설에 나오는 장면들이 여자를 강간하는 장면에서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6

정육에 불타서 참을 수 없을 땐 한 몸처럼 되지..안 그래요 여기 남학생들,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그래요, 내가 아한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육이 총격되고 나면 난 남이라는 식으로 씩 돌아 누워 잠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매일 먹는 반찬 지겹기도 하지 않겠어요?

11/11

남자들 출장가고 그러면 다들 딴 짓하게 마련이지요, 사실 출장간다면 남자 동료들이 다들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학생들, 남편이 출장간다면 괴로워해야 합니다..등등

제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는데 새로 고졸 여사원이 들어오면 꼭 따먹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성을 아는 눈빛은 어둡고 음침합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군대 갔다온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사실 군대 갔다오면 다 사창가에 가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난 혹 보면 성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2. 의대 교수

■ 의대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성폭력적 발언들을 과학적인 사실로써 위장하여 한다. 이를테면 이러한 경우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생생리적으로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하며 휴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매대춘에 종사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는 거지요." (행동과학-인간의 성행동) 그리고 수업 중에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지금도 때때로 회자되곤 하는 어느 노교수(생화학)의 발언을 한 번 들어보자 "체내의 양이온과 음이온간의 총전하량은 같지? 일단 남녀는 평등하다는 것이야. 그러나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물수가 더 많지? 그것은 현실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렇지? 여자가 말이야, 좀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안 그래?"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뱀을 한 마리 봤다고 합시다. 아니 길을 가다가 예쁘고 색시한 여학생을 만났다고 합시다. 하긴 여자는 뱀과 같지요. 그렇다면 뇌의 어떤 경로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신경생리)"

■ 본과 4학년 실습생의 이야기다. 언젠가 그녀의 실습조는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여자였다고 한다. 어느 과를 돌 때 교수가 그들을 보더니 "완전히 여자들 판이로구만, 여의사를 많이 만들어 세브란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있나?" 하고 툭툭거렸다. 그러자 그녀들은 반항적으로 "예"하고 대답을 해 버렸고 이에 발끈한 교수는 유유히 한 남학생을 가리켜 "아, 너도 내일부터는 치마 입고 와." 하고 말했다. 그녀는 대개의 경우 여학생들이 과 동기보다는 레지던트나 교수로부터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3. 상대 교수

■ 상대 모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한 발언

"나는 왜 여자들이 스텐더스가 못돼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사실 스텐더스랑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랑 뭐가 다르나?"

그리고 그 강사는 수업시간마다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도 안 갔다온 애들이 군가산제에 대해서 뭐가 그리 말이 많나.'라거나 '남자는 원래 총을 잘 쏘고 여자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 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4. 문대 교수

■ 다음은 총여학생회 ID로 온 메일입니다. 자세한 수업 명과 교수명은 아직 밝힐 수가 없기에 삭제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화가 나서 어디 말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들렀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업시간에 앞에 앉은 어떤 여학생이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자네 밤업소 나가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용어를 설명하시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예라는 것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고 선택을 할 때 약혼만 했을 때는 다른 남자가 맘에 들면 파혼을 하면 되지만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와서는 다른 남자가 더 맘에 든다고 해도 이미 첫날밤을 치른 버린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택한 남자를 좋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교수님은 종종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 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할 때가 없나 찾다가 그냥 총여에 말하는 게 좀 낫 듯 싶어 편지 드립니다.

■ 모 교양수업 중에 연세 독수리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 수업 강사가 독수리상 앞에 처녀가 지나가면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는 걸 보면 요즘 연세 여학생인지 성관념(?), 풍습(?)을 알 수 있는 얘기다..라는 발언을 했다. 후에 웃으면서 여기 있는 남학생들 중에 총각 있으면 손들어보라고 했다...학생들은 킁킁대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고 몇몇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손을 들기도 했다. 그러더니 그 강사가 다시 여기 있는 여학생들 중에 처녀 있으면 일어나보라는 발언을 했다.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분위기는 말 그대로 썩어-

수위아저씨에 의한 성폭력

■ 작년 모 건물에 게시는 수위 아저씨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팔을 쓰다듬는다든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경우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다른 데를 가다가도 익숙한 여학생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그 아저씨가 자신한테만 이상한 줄 알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저씨한테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 학생회로 신고를 했다.

학생사이의 성폭력

■ 97년 신입생 수련회였다. 조별로 각자의 방에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였다. 그러다가 가벼운 성적인 농담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듯 말하는 놈이다.) 재수 시절 횡랑리 588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것이었다. "나는 아는 형을 따라 어떤 방에 들어가서는 야한 비디오를 하나 보다가 형이 여자를 하나 시키길래 나도 졸라서 하나 신청하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기대랑은 달리 예쁘고 잘빠진 여자가 아니라 다 늙어가지고 맛이 간 여자가 들어와서 옷을 벗는 것이야. 보니까 배도 늙어지고 그러데. 그래서 뒤에서 잡는 것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 20명 가까운 학생들 중 여자는 4명이었다. 이들은 그전의 그저 야한 이야기와는 달리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고 그는 사과를 않고 이해할 수 없어 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그는 선풍기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한다며 옷통을 벗고 정력가를 불렀다.

■ 이것은 술자리에서의 일이다.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술 냄새를 풍기며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으며 친한 척을 하였다.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녀는 모른 척 하다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 94학년 남자 선배 중 한 명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듯 보이는 사람이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나는 그에게 쌀쌀한 반응을 보였다. 정리하고 나왔을 때 그는 비가 온다는 핑계로 '우산을 세워줄까'라고 물으며 다정한 척 내위팔과 어깨를 자주 만져댔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그는 "그럼 너도 오빠 거 만져."라고 답했다.

■ 한 동아리의 신입생 환영회였다. 여자 선배가 남자 후배와 술을 마시다 나와서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 여학우는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다. 그런데 남자 후배가 이야기 도중 자주 드러난 허벅지를 더 들었다. 그녀는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그는 사과했다.

■ 모 단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피해자는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한 실습조는 남학생 6명에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나이 많은 남자 하나가 자주 실습 도중 음담패설을 하거나 때때로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자.", "너를 lithotomy(나도 모름)에 넣어주고 싶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다른 남학생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왔다. 결국 이 여학생 들은 여학생 휴게실에만 이 상황을 호소하는 자보를 게시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다. 피해자에게 다른 사례들과 함께 공론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 어딘데. 한번 잘못 찍혀봐 까닥하다가는 인턴 레지던트 될 때까지 피 보는 거 아냐."

■ 해부학 오리엔테이션 때의 일이다. 척추 세움근들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르친다. "자 순서대로 엉덩이가 가장 이른 가시나는 반드시 못사람들로부터 돌림방을 당한다.(엉덩갈비근, 가장 긴근, 가시근, 반가시근, 뒷갈래근, 돌림근)" 어딘지 짚줬지만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처지가 아니라 관두었다. 나중에도 시험 전에 여학생들도 그렇게 외우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 "과 선배 중 **는 처녀가 아니다.", "그 여자에는 남성편력이 장난이 아니더라.", 등의 말로 여성을 가십화.

■ 술자리에서 남학우가 "나보다는 여자가 부어주는 술이 맛있겠지?" 혹은 "원래 왼쪽 자리는 여자자리야." 등의 말을 했다.

■ 술을 마시고 2차로 옮기는 길에서 어느 여학생의 어깨에 남학생이 팔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여학생은 거부했지만, "우리 사이에?"라는 말로 넘기며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 외에도 선·후배간의 침밀함을 이유로 한 신체적 접촉들,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혹은 뺨을 만지곤 한다. 거부시에는 "다른 애들은 가만 있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 혹은 "너 나를 남자로 보는 거냐? 그래서 불편해 하는 거야?" 등의 반응으로 여학생들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행동들을 반복했다.

■ 진학에 관해서 선배들과 상담을 할 때, 선배들의 공통된 반응, "여자들은 어차피 전공 공부 열심히 해봐야 전공 살려서 취업 못하니깐 영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 외에도 여학우들이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해서 남자들이 군대 가야 된다"라는 식의 말들을 한다.(남자들은 대학원 가면 군대 안 갈 수 있는데, 여학우들이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해서 어려워진다...).

■ 99년 여학생의 수가 많은 모단대 신입생 수련회때 일어난 일이다. 그 단대에서는 수련회 마지막 순서로 항상 춤을 추는 디스코 타임이 있다고 한다. 99년에도 그 디스코 타임의 준비를 96학번 남학우에게 맡겼는데 그 남학우는 중앙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남학우는 디스코 타임 준비를 잘 해보려고 동아리 사람들(모두 남학우였다)을 신입생 수련회에 다 데리고 와서 행사 준비에서 조명 설치, 행사 진행까지 모두 맡아서 했다. 디스코 타임이 시작되기 전에 장기자랑과 학회 소개 순서가 있었다. 학회 소개를 하는 시간에는 선배들까지 다 와서 무대에 나가 학회 소개를 했다. 디스코 타임 준비를 했던 동아리 사람들은 옆에 서 있었다. 수련회가 끝나고 서울에 와서 그 단대의 한 여학우가 우연히 그 동아리의 통신 게시판에 들어가봤는데 그 단대 수련회 후기가 있었다. 그 글의 내용은 디스코 타임 전 학회 소개를 할 때 동아리 사람들이 옆에 서 있으면서 학회마다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겼는데 전반적인 점수는 1, 2점 대였고, 뒷풀이때 5점짜리 여학생이 누구 누구 옆에 앉아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이 그 단대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안 그 96학번 남학우는 동아리에서 문제의 글을 올린 사람에게 그 글과 관련한 단대 여학우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후에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동아리 통신 게시판에서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그 96학번 남학우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타학교의 성폭력 사례

지난(1999년)과 올해 타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공론화가 되었고 공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만 실었습니다.

학생사이의 성폭력

KCH

■ 문대 세터 성폭력 사건

99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자리에서 96학번 선배가 99학번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가해자는 두명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허리를 감싸안고 뺨 허리살을 만지는 등의 성폭력을 가했다. 놀란 여학우들이 자리를 피해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자 가해자는 계속 따라와 러브샷을 하자는 등 추근거렸다. 처음에는 잘못을 시인하였으나 약속한 상담소 재교육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는 등 위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정대 화장실 성폭력 사건

2월 26일 정대 2층 여학생 화장실에서 한 여학우가 세면대에 붙어 있는 거울을 통해 뺨 끝안에 남자머리가 있는 것을보고 놀라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가해자를 잡았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는 타학교의 학생이었고, 이미 두번의 가해 사실이 더 있었음이 드러났으나 사건 해결과정에서 자취를 감춰 마무리를 보지 못 하였다. 이후 가해자가 다시 학내에 나타나 여학생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소속 학교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 도읍지 사건

99년 3월 3일 자정 무렵 피해자가 도읍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위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 아학 성폭력 사건

서울 북부 청소년 학교 신입교사 환영회 술자리에서 선배교사 경영대 95학번이 신입교사인 피해자에게 2차 술자리에서 성폭력을 가하였다. 가해자는 부분적으로 사실을 인정하지만 강요했음을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공개하고 학칙처리를 학교에 요구했다. 가해자는 야학에서 재임용이 거부되었으나 야학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보지 않고 여학생위원회에 항의를 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학교 또한 가해자만 만나고 성폭력이 아닌란 판단을 내려 재요청이 들어간 상태이다.

■ 자취방 성폭력 사건

자취방에 휴가중인 군인 철학과 94학번이 15일반 새차래 침입해 한 명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17일

다시 침입해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면 중 검거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으며 재판에 회부되었다.

SCI

■ 99년 10월 21일 목요일 한 남학생이 도서관 4층 컴퓨터실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다가 컴퓨터실 문닫는 시간에 나와 도서관 4층 신관 화장실에 가려다가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훑쳐보고 싶은 마음에 따라 들어갔다. 화장실 입구 정도에 갔을 때 뒤에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서 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숨었고, 이후 열 칸에서 볼 일 보는 여학생을 밑의 공간을 통해 훑쳐보았다. 두 번째로 들어 온 여학생을 훑쳐보려다가 그 여학생이 엿보려고 하는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도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옆에서 5분 가량 기다리다 가운데 칸에서 남학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붙잡았다. 여학생은 그 남학생에게 학년 학과를 물어 확인하였고, 여학생이 처음이냐고 묻자 가해자가 자기는 2~3년 밖에 안 했고, 상습범이 아니더라고 말했으며(이 말은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생각을 2~3년했다고 남학생 쪽에서 진술함)공개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후 여학생은 본인에게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되어 돌려보냈다. 그러나 집에 와 생각해 보니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 남학생으로 인해 피해 받을 학생들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총학생회에 신고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공개 실명 사과 자보를 붙였다. 그리고 학교 여학생 상담실에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도 받았다. 그리고 학교측에 화장실 보수-문 높이, 환풍기, 조명, 블라인드, 외진곳-를 요구하였음.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DCI

■ 사립 대학의 정원 및 등록금 등에 관한 것들이 자율화되면서 이 학교 역시 등록금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이에 지난 2000년 2월 10일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장 등 몇몇이 정확한 등록금 인상률을 알기 위해 학생회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학내 주체인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등록금 인상률에 관한 정확한 답변은 뒤로 한 채 학생과는 식사를 하면서 인상률 및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등록금 인상률과 같은 사안은 식사와 같은 형식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정보를 얻어낼 수 관례적인 풍토 때문에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간부와 교직원이 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쉽게 되지 않자 간부 몇몇이 다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약간 취한 상태가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기간 서로의 좋지 않은 관계들을 풀자며 피해자(학생회 간부)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난 1월 한 동아리 사람이 학교에서 지급되는 석유를 받으러 갔으나 동아리 연합(이하 동연)이 대행위 체계는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동아리 연합회장이 없으니 석유 한통으로 받아서 동덕에 있는 동아리 모두가 나눠서 쓰라며 돌려보내게 된 것에서 연유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대행위는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인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생과의 처사에)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러 학생회에 들어가자 '니가 편대 나서나'며 피해자를 강제로 학생회에서 끌어내는 등의 몸싸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정식적인 사과 한번 하지도 않았던 학생과는 지난 사소한 감정들을 풀자며 악수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학생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악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자 학생과 직원이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악수할 때 손에 꼭 입을 맞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닐뿐더러 학교 일로 인한 마찰의 사과를 그렇게 받을 이유는 없다며 피해자가 이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학생과 직원(1인)에 의한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크게 말다툼을 일어나게 되었다.

이밖에도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거나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자는 행동이 학생과에 의해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불쾌감을 계속해서 전달했지만 '말 같아서 그렇다'라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의한 성적 행위는 계속되었다.

신고가 들어온 후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나 가해자는 비대위에서 사건에 대한 논의·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면 '할 말 있으면 (학생과로) 내려와!'라고 대답하기가 일쑤였다. 또 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졸업식 때문에 학교에 오자 비대위와의 논의에 불성실하면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전 총학생회장이나 부총학생회장을 붙들고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활동하기 힘들어... 네가 가서 말 좀 잘해봐'라는 위협 섞인 회유의 방식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게다가 비대위와의 사건 해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가해자가 물담고 있는 학생과의 또 다른 교직원은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공식적인 사과 절차 없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다가 결국 합의 테이블이 결렬되고 말았으며, 비대위에서는 교육부 여성정책과에 신고하였으며, 학교측에서도 교육부에 의해 사건을 알게 되었으나 교육부로 회신을 안 한 상태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반(反)성폭력학칙

- 교육부 '업무처리요령안'을 중심으로

1999년 6월 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이 각 대학으로 내려왔다. 이후 각 대학 본부 측에서는 다양하게 성폭력에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어 준비를 진행하였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 마련하라는 세부계획으로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안(이하 학칙)을 준비중이며 이미 학교측의 가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학교측이 이처럼 발빠르게 학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교육부)'이 내려왔기 때문이며 학교측의 가안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도 이 법률과 교육부지침이기 때문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그에 따른 교육부 지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옴으로 해서 실제 반(反)성폭력 학칙의 제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그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 지침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학칙제정과정과 이후 적용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드러날 문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부 지침에서 유념할 부분

11. 교육환경권

*성차별적인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

2. 수업상 또는 고용상 적절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수업상 또는 고용상 적절한 환경은 직원, 학생 및 관계자의 협력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의한 수업상 또는 고용상의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 학생 및 관계자를 이혼 바 굴짓거리로 보거나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당사자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말 것

나. 성희롱에 관한 사안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서 필요한 배려와 행동을 취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행동 필요

(1)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의 촉구

성희롱으로 수업상 또는 고용상 적절한 환경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기회를 마련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

(2)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경우 직접 불려서 상담

피해자는 '부끄럽다', '굴치거리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 '모욕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불려서 가법자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함

다. 성희롱이 있는 경우 수업이나 고용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상급감독자 등 제3자에 게 상담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교육부 지침 <별첨 1> 중

* 성폭력적 강사 및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부칙 중

제16조(성희롱의 금지영역) 법 제7조 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용시지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품의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질서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제17조(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행위
 - 가. 입맞춤이나 포옹, 위에서 과잉기 등의 신체적 접촉
 -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다. 입마니 매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희유하는 행위
 -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12. 외내 성폭력 상담소 개설

물론 교육부 지침에는 각 학교별 고충상담기관 설치의 의무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각 학교 사정에 맞게 자체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하여 학교 나름의 계획에 맡기는 등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는 이미 성폭력 상담소가 존재하므로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일부(교육부 지침 중)

가. 고충상담자의 지정

1)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에 관한 고충신청 및 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함)이 "직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제기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 고충상담을 받은 직원 또는 고충상담에 응하는 상담원 등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2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되, 상담시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성의 상담직원이 동행)

3.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서는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담요원(상담교사, 학부교, 자원봉사자 등 적절한 자원) 등을 두고 상담을 받을 일시, 장소 및 절차를 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기회 확대 방안 강구

4. 상담요원에 대한 적절한 연수기회 부여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상담 전문성 제고 방안 강구(상담자 연수기관 : 별첨 참고자료 8. 단체명단 참조)

나. 고충상담자의 임무

- 1) 상담원 등은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문제의 사실관계 조사 및 당해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 등으로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 노력
- 2) 상담원 등은 위 고충상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역향 발화
- 3) 상담원, 주변 관계자 등은 고충상담에 응함에 있어 관련자의 자존심이나 명예, 인권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비밀준수 의무 부과)

13.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우리 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에서 아래 조항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학칙을 준비하고 있다.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중 일부(교육부 지침)
- 다. 대학 등 각급학교(기관)의 역할
 -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통보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하여 학교(기관)별로 실행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현장에서 학생 상호간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 수업시 지도하고, 학칙, 내부규정 등으로 문제해결 노력
 - 세부계획에 포함시킬 주요 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별첨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참조)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 제도의 마련 등
 - 고충상담원은 가능한 상담부장,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요원 등 기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되 학부, 학교운영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중 상담교육 이수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조치
 - 고충상담원 지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 활용 모색
 - 특히,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별로 자체실행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그러나 위 조항에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라고 강조한 부분은 너무나 애매하게 해석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

2. 교육부 지침의 한계

21. 성폭력의 개념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함.

※ 남녀차별의 내용 : 고용, 교육(교육기회·조건·방법),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말함.

2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중

교육부의 지침은 학교(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이 기반으로 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목적이 업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 상의 성폭력 개념은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성폭력 해결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 중심’에 대한 의식 또한 지침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침에 의한 성희롱의 개념에서는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학내 전반적인 남성중심적 문화, 학교 건물들의 편의시설, 학내 행사 프로그램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적인 측면 또한 배제되어 있다.

22. 학생-학생, 교수-교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이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에 기반하고 있는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탈락되어 있는 부분이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 개념 자체가 ‘위계가 높은 사람이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가 낮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 부분은 간과하게 된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학교별로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세부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반성폭력 학칙을 주장하고 제안한다. 학칙은 그 적용대상이 교수·교직원·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분석

-2000년 4월 연세인 5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 성폭력의 유형, 사례 조사

1. 여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

1. 공격적인 자리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

예) "여자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나?", "여자가 많으면 일이 안된다"

2.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예) "엉덩이가 커서 애 잘 낳겠다.", "얼굴값 한다.", "너 술집 나가니?"

3. 여성다움에 대한 감요

예) "여자는 순종이 미덕이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여자가 너무 나선다."

4. 여성들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하는 음담패설 및 음란가요 등

5. 여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대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 자질 등을 과소평가하는 발언

예) "여대 공대도 공대냐?" "여대는 간판따라 가는 곳 아니냐?"

1-1 위와 같은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를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남자	여자	total
매우 그렇다	31명(14.7%)	124명(40.5%)	155명(30%)
대체로 그렇다	100명(47.4%)	122명(39.9%)	222명(42.9%)
약간 그렇다	68명(32.2%)	58명(19%)	126명(2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7명(3.3%)	2명(0.7%)	9명(1.7%)
그렇지 않다	2명(0.9%)	.	2명(0.4%)
매우 그렇지않다	3명(1.4%)	.	3명(0.6%)
total	211명(100%)	306명(100%)	517명(100%)

->언어적 유형에 성폭력에 대해 여성은 대체로 그렇다까지가 80.4%인 반면 남성의 경우 62.1% 정도이다. 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합
매우 그렇다	49명(24.9%)	57명(28.1%)	34명(39.5%)	14명(46.7%)	154명(29.8%)
대체로 그렇다	86명(43.7%)	93명(45.8%)	33명(38.4%)	10명(33.3%)	222명(43%)
약간 그렇다	58명(29.4%)	48명(23.6%)	16명(18.6%)	4명(13.3%)	126명(2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명(1.5%)	3명(1.5%)	2명(2.3%)	1명(3.3%)	9명(1.7%)
그렇지 않다	.	1명(0.5%)	.	1명(3.3%)	2명(0.4%)
매우 그렇다	1명(0.5%)	1명(0.5%)	1명(1.2%)	.	3명(0.6%)
합	197명(100%)	203명(100%)	86명(100%)	30명 (100%)	516명(100%)

-> 학년별 통계를 볼 때, 고학년일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드러난다.

1-2 위와 같은 발언을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에게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자신에게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남	여	합
있다	77명(42.3%)	178명(58.4%)	255명(52.4%)
없다	105명(57.7%)	127명(41.6%)	232(47.6%)
합	182명(100%)	305명(100%)	487명(100%)

1-3 만약 위와 같은 발언들을 들었거나 전해들었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가능)

	남자	여자	total
교수	14명(27%)	38명(73%)	52명(100%)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	55명(32%)	117명(68%)	172명(100%)
교직원	2명(25%)	6명(75%)	8명(100%)
모르는 사람	31명(36%)	55명(64%)	86명(100%)
친한 동기, 선후배	47명(36.7%)	81명(63.3%)	128명(100%)
타학교 학생	14명(29.8%)	33명(70.2%)	47명(100%)

-> 교수가 공격 자리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친한 동기, 선후배,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가 여성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2. 남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

1. 남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예) "기생모라비 같다."

2. 남성다움에 대한 감요

예) "남자가 왜 그렇게 출썩거리나?",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나?, 사내자식아..."

3. 다수의 여성들이 소수의 남성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 또는 행위

2-1 위의 경우 중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의 번호를 써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피해자와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남자	여자	total
신체, 외모	65명(33.3%)	130명(66.7%)	195명(100%)
남자다운 강요	84명(32.7%)	173명(67.3%)	257명(100%)
다수여자, 소수남자	110명(41.2%)	157명(58.8%)	267명(100%)

3.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 ① 개인의 행동

1. 여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결눈질한다.
2.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3. 여성 앞에서 음란물(누드사진, 포르노 만화, 비디오, 포스터 등)을 보거나 돌려보거나 부착한다.
4. 휘파람, 고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 앞에서 낸다.
5. 통신망(pc통신, 삐삐, 전화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6. 여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주변을 만진다. 또는 성기를 꺼내놓고 보란 듯이 자위 행위를 한다. (성노출증)

3-1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남	여	합
매우 그렇다	108(52.7%)	244(80%)	352(69%)
대체로 그렇다	73(35.6%)	54(17.7%)	127(24.9%)
약간 그렇다	16(7.8%)	7(2.3%)	23(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0%)	.	4(0.8%)
그렇지 않다	2(1.0%)	.	2(0.4%)
매우 그렇지 않다	2(1.0%)	.	2(0.4%)
합	205(100%)	305(100%)	510(100%)

-> 비언어적 유형인 경우 남성과 여성 마찬가지로 성폭력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52.7%에 불과한 반면 여성인 경우는 80%로 인식의 정도가 확연하게 달랐다.

3-2 위와 같은 행위를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남	여	합
예	20(13.2%)	144(45.6%)	164(35.1%)
아니요	131(86.8%)	172(54.4%)	303(64.9%)
합	151(100%)	316(100%)	467(100%)

-> 여성의 경우 절반정도가 비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남	여	합
교수	3명(42.9%)	4명(57.1%)	7명(100%)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	21명(27.6%)	55명(72.4%)	76명(100%)
교직원	1명(25%)	3명(75%)	4명(100%)
모르는 사람	22명(18.2%)	99명(81.8%)	121명(100%)
친한 동기, 선후배	11명(24.4%)	34명(75.6%)	45명(100%)
타학교 구성원	7명(41.2%)	10명(58.8%)	17명(100%)

-> 안면 있는 동기, 친한 동기, 선후배에 의해 성폭력을 느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다수 있었으며, 교수에 의한 사례도 4건이 있었다.

3.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 ② 단체의 행동

1.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학업이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잡일을 시킨다.
예) 모교지에서 여지만 부엌일을 시킨다. 차 심부름
2. 세터, 동문회 등의 단체 모임에서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
3. 여러 모임에서 여성을 소외시킨다.
예) 술자리에서 시간이 늦었을 때, 여성이 가면 "분위기 쎈다."고 하고, 끝까지 있으면 "넌 어떻게 된 여자애가."라고 한다. / 대화에서 "이건 사나이들의 이야기야. 좀 빠져." 한다
4. 술자리에서 남자 사이에 끼어 앉거나 술시중을 돌게 한다.

3-4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남	여	합
매우 그렇다	43명(21%)	135명(44.1%)	178명(34.8%)
대체로 그렇다	88명(42.9%)	121명(39.5%)	209명(40.9%)
약간 그렇다	53명(25.9%)	47명(15.4%)	100명(1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명(7.8%)	3명(1%)	19명(3.7%)
그렇지 않다	4명(2%)	.	4명(0.8%)
매우 그렇다	1명(0.5%)	.	1명(0.2%)
합	205명(100%)	306명(100%)	511명(100%)

학년	1	2	3	4	합
매우 그렇다	68명(35.4%)	60명(29.7%)	32명(36.8%)	16명(55.2%)	176명(34.5%)
대체로 그렇다	73명(38%)	100명(49.5%)	29명(33.3%)	8명(27.6%)	210명(41.2%)
약간 그렇다	40명(20.8%)	32명(15.8%)	24명(27.6%)	4명(13.8%)	100명(19.6%)
그렇지않은편이다	8명(4.2%)	9명(4.5%)	1명(1.1%)	1명(3.4%)	19명(3.7%)
그렇지 않다	3명(1.6%)	1명(0.5%)	.	.	4명(0.8%)
매우 그렇다	.	.	1명(1.1%)	.	1명(0.2%)
합	192명(100%)	202명(100%)	87명(100%)	29명(100%)	510명(100%)

3-5 위와 같은 행위를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남	여	합
예	30명(20.1%)	133명(45.1%)	163명(36.7%)
아니요	119명(79.9%)	162명(54.9%)	281명(63.3%)
합	149명(100%)	295명(100%)	444명(100%)

-> 재미, 단합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여성에게 상당히 불편감을 줄 수 있음이 나타난다.

4.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 - ① 성희롱

1.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쪽으로 기대오거나 손을 댄다. 또는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
2. 단체와 모임의 술자리에서 남학우가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혹은 술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
3.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한다
4.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한다. 또는 신체접촉을 요구한다.

4-1 위와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로 심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한 성폭력이다'를 5, '약간 성폭력적이다'를 1로 계산해서 1부터 5까지 수치에 표기해 주십시오.

	남	여	합
5	131명(64.2%)	237명(78.7%)	368명(72.9%)
4	53명(26%)	49명(16.3%)	102명(20.2%)
3	11명(5.4%)	6명(2%)	17명(3.4%)
2	7명(3.4%)	7명(2.3%)	14명(2.8%)
1	2명(1%)	2명(0.7%)	4명(0.8%)
합	204명(100%)	301명(100%)	505명(100%)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
1	.	1명(0.5%)	2명(2.4%)	1명(3.3%)	4명(0.8%)
2	3명(1.6%)	7명(3.5%)	2명(2.4%)	2명(6.7%)	14명(2.8%)
3	5명(2.6%)	9명(4.5%)	2명(2.4%)	1명(3.3%)	17명(3.4%)
4	41명(21.5%)	45명(22.6%)	13명(15.5%)	3명(10%)	102명(20.2%)
5	142명(74.3%)	137명(68.8%)	65명(77.4%)	23명(76.7%)	367명(72.8%)
합	191명(100%)	199명(100%)	84명(100%)	30명(100%)	504명(100%)

-> 성희롱에 대해 남, 녀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나, 여성은 5, 남성은 4.5에 분포되어 있다.

4-2 위와 같은 행위를 학내 구성원들 혹은 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남	여	합
예	22명(14.8%)	93명(31.1%)	115명(25.7%)
아니요	127명(85.2%)	206명(68.9%)	333명(74.3%)
합	149명(100%)	299명(100%)	448명(100%)

	1	2	3	4	합
예	24명(15%)	47명(25.7%)	35명(42.2%)	12명(44.4%)	118명(26%)
아니요	136명(85%)	136명(74.3%)	48명(57.8%)	15명(55.6%)	335명(74%)
합	160명(100%)	183명(100%)	83명(100%)	27명(100%)	453명(100%)

> 술자리에서의 성적 접촉에 대해 여성의 경우 피해경험은 있으나, 성폭력으로 인식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폭력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4-3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남	여	합
교수	3명(42.9%)	4명(57.1%)	7명(100%)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	25명(32.1%)	53명(67.9%)	78명(100%)
교직원		1명(100%)	1명(100%)
모르는 사람	11명(29.7%)	26명(70.3%)	37명(100%)
친한 동기, 선후배	15명(27.3%)	40명(72.7%)	55명(100%)
타학교 구성원	3명(25%)	9명(75%)	12명(100%)

> 친한동기, 선후배,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4.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영 - ② 강간, 강간미수

1. 모교지방에서 자고 있는데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 했다).
2. 자취방 등 혼자 살고 있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찾아와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 했다).
3. 모교지나 술자리 등에서 바깥 등 으스스한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했다(강간하려 했다).
4. 동아리방이나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 밀폐된 곳에 혼자 있는데 들어와서 강간했다(또는 강간하려 했다).
5. 기타

4-4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남	여	합
예	4명(2.6%)	12명(3.9%)	16명(3.5%)
아니요	147명(97.4%)	292명(96.1%)	439명(96.5%)
합	151명(100%)	304명(100%)	455명(100%)

	1	2	3	4	합
예	1명(0.6%)	6명(3.3%)	6명(7.3%)	3명(11.1%)	16명(3.5%)
아니요	162명(99.4%)	177명(96.7%)	76명(92.7%)	24명(88.9%)	439명(96.5%)
합	163명(100%)	183명(100%)	82명(100%)	27명(100%)	455명(100%)

> 학내에서도 강간 및 준강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4-5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각의 경우에 V표를 해주십시오.

	남	여	합
교수	2명(100%)		2명(100%)
안면있는 동기, 선후배	5명(38.5%)	8명(61.5%)	13명(100%)
교직원			
모르는 사람	8명(66.7%)	4명(33.3%)	12명(100%)
친한 동기, 선후배	3명(42.9%)	4명(57.1%)	7명(100%)
타학교 구성원	3명(60%)	2명(40%)	5명(100%)

> 여성의 경우, 아는 동기 및 선후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II. 성폭력 학칙 제정에 관하여

5-1 위에 예시를 든 상황들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학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여	합
예	166명(80.6%)	284명(92.8%)	405명(87.9%)
아니요	40명(19.4%)	22명(7.2%)	62명(12.1%)
합	206명(100%)	306명(100%)	512명(100%)

5-2 (5-1번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대답해 주십시오) 학칙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성폭력 문제는 학교 차원을 떠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②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해서 처리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 ③ 사소한 일까지 성폭력 학칙에 적용되면 평소 생활이 매우 혼란스럽고 번거로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④ 학칙이 제정되면, 학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성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⑤ 학칙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⑥ 기타

	남	여	합
1	7명(20%)	4명(21.1%)	11명(20.4%)
2	4명(11.4%)	1명(5.3%)	5명(9.3%)
3	7명(20%)	3명(15.8%)	10명(18.5%)
4	9명(25.7%)	3명(15.8%)	12명(22.2%)
5	5명(14.3%)	8명(42.1%)	13명(24.1%)
6	3명(8.6%)	.	3명(5.6%)
합	35명(100%)	19명(100%)	54명(100%)

> 학칙의 현실성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학칙제정시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5-3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누구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수 ② 교직원 ③ 학생 ④ 성폭력 관련 학외 전문가
- ⑤ 교수와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가 똑같은 권한하에 만들어야 한다.
- ⑥ 기타

	남	여	합
1	.	1명(0.4%)	1명(0.2%)
2	.	.	.
3	35명(20.3%)	51명(18.3%)	86명(19.1%)
4	12명(7%)	20명(7.2%)	32명(7.1%)
5	121명(70.3%)	204명(73.1%)	325명(72.1%)
6	4명(2.3%)	3명(1.1%)	7명(1.6%)
합	172명(100%)	279명(100%)	451명(100%)

> 학내의 모든 주체 및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72.1%) 그러나 교수 또는 교직원의 일방적인

제정보다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학생주도 20%)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5-4-1 어느 정도의 성폭력까지 징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언어/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 모두 징계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 ② 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 대상으로 하면 된다.
- ③ 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 대상으로 하면 된다.
- ④ 감간, 감간미수 수위의 성폭력만 징계해야 한다.
- ⑤ 기타

	남	여	합
1	49명(24.4%)	132명(44.4%)	181명(36.3%)
2	78명(38.8%)	106명(35.7%)	184명(36.9%)
3	58명(28.9%)	47명(15.8%)	105명(21.1%)
4	9명 (4.5%)	8명(2.7%)	17명(3.4%)
5	7명(3.5%)	4명(1.3%)	11명(2.2%)
합	201명(100%)	297명(100%)	498명(100%)

5-4-2 현실적으로는 어느 수위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언어/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 모두 징계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 ② 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 대상으로 하면 된다.
- ③ 물리적인 성폭력만 징계 대상으로 하면 된다.
- ④ 감간, 감간미수 수위의 성폭력만 징계해야 한다.
- ⑤ 기타

	남	여	합
1	14명(7%)	44명(14.7%)	58명(11.6%)
2	57명(28.4%)	87명(29%)	144명(28.7%)
3	95명(47.3%)	120명(40%)	215명(42.9%)
4	30명(14.9%)	46명(15.3%)	76명(15.2%)
5	5명 (2.5%)	3명(1%)	8명(1.6%)
합	201명(100%)	300명(100%)	501명(100%)

>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징계 대상의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징계 대상에 있어 여성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남성은 비언어, 물리적 성폭력정도가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5-5 만약,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진다면, 징계 유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제적, 휴학 등 학업을 제한하는 방법
- ② 일정기간 여성 단체에 봉사하는 등의 봉사행위
- ③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④ 일정기간 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 ⑤ 기타

	남	여	합
1	56명(27.3%)	149명(72.7%)	205명(100%)
2	91명(37.8%)	150명(62.2%)	241명(100%)
3	133명(37.4%)	223명(62.6%)	356명(100%)
4	52명(34.9%)	97명(65.1%)	149명(100%)
5			

이 설문조사는 연세인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500부 중 565부가 수거되었습니다.
연세 Survey에서 통계처리에 참여하였습니다.